

[신구대비표- 별권3]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가이드라인』 개정(안)

현재 매뉴얼	26년도 개정(안)	개정 사유
<p>p.10 제2장 제재처분제도 개요 2. 주요용어 정리 (2) 제재처분 대상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재처분을 기관과 개인 모두에게 할 것인지, 어느 한쪽에만 할 것인지 결정 할 때 사안의 경중,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 유무, 기관과 개인의 책임비중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p>※ 제재처분 대상자 결정시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제재처분을 통해 얻게 될 공익과 처분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 등을 비교·형량 하여 가장 적절한 자에게 책임을 부여하여야 함</p>	<p>p.10 제2장 제재처분제도 개요 2. 주요용어 정리 (2) 제재처분 대상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재처분을 기관과 개인 모두에게 할 것인지, 어느 한쪽에만 할 것인지 결정 할 때 사안의 경중,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 유무, 기관과 개인의 책임비중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p>※ 제재처분 대상자 결정시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제재처분을 통해 얻게 될 공익과 처분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 등을 비교·형량 하여 가장 적절한 자에게 책임을 부여하여야 함</p> <p>※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제재처분 사유가 되는 행위에 대하여 관리·감독 책임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경우에 한하여 제재처분 대상자로 판단할 수 있음. 연구개발기관과 해당 위반행위 사이에 관리 책임 또는 감독 책임의 귀속이 명확하게 인정되지 않는다면, 단순히 소속 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비영리법인을 제재처분의 대상자로 보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음</p>	<p>- 비영리법인의 제재처분 대상기준 명확화</p>

<p>p.11 제2장 제재처분제도 개요 2. 주요용어 정리 (4) 참여제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뿐만 아니라 연구지원을 제외한 국가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일련의 국가연구개발활동(법 제2조제8호 각호)의 참여가 제한됨 ☑ p.83 제5장의 2 참고 	<p>p.11 제2장 제재처분제도 개요 2. 주요용어 정리 (4) 참여제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뿐만 아니라 연구지원을 제외한 국가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일련의 국가연구개발활동(법 제2조제8호 각 목)의 참여가 제한됨 ☑ p.83 제5장의 2 참고 	<p>- 문구 수정</p>																
<p>p.13 제2장 제재처분제도 개요 2. 주요용어 정리 (7) 연구개발비 환수</p>	<p>p.14 제2장 제재처분제도 개요 2. 주요용어 정리 (7) 연구개발비 환수 <제재부가금/회수금/환수금 비교></p> <table border="1" data-bbox="1044 898 1882 1299"> <thead> <tr> <th>구분</th> <th>제재부가금</th> <th>회수금</th> <th>환수금</th> </tr> </thead> <tbody> <tr> <td>정의</td> <td>제재처분 귀책사유 경우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부과되는 금액</td> <td>정산결과 관계법령에 따라 회수하는 금액</td> <td>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한 금액에 대한 환수</td> </tr> <tr> <td>법적 근거</td> <td>법 제32조제1항</td> <td>법 제13조제7항, 시행령 제26조제5항 각호</td> <td>법 제32조제3항, 시행령 제59조제3항</td> </tr> <tr> <td>부과 기준</td> <td>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 이내</td> <td>정산 결과에 따른 금액</td> <td>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한 금액</td> </tr> </tbody> </table>	구분	제재부가금	회수금	환수금	정의	제재처분 귀책사유 경우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부과되는 금액	정산결과 관계법령에 따라 회수하는 금액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한 금액에 대한 환수	법적 근거	법 제32조제1항	법 제13조제7항, 시행령 제26조제5항 각호	법 제32조제3항, 시행령 제59조제3항	부과 기준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 이내	정산 결과에 따른 금액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한 금액	<p>- 제재부가금, 회수금, 환수금의 구분 명확화를 위한 비교표 추가</p>
구분	제재부가금	회수금	환수금															
정의	제재처분 귀책사유 경우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부과되는 금액	정산결과 관계법령에 따라 회수하는 금액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한 금액에 대한 환수															
법적 근거	법 제32조제1항	법 제13조제7항, 시행령 제26조제5항 각호	법 제32조제3항, 시행령 제59조제3항															
부과 기준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 이내	정산 결과에 따른 금액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한 금액															

p.30 ~ p.31

제3장 제재처분 절차

〈 참고 : 재검토요청서 서식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4쪽 중 1쪽)

재검토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 접수번호란과 접수일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제출인	성명 또는 기관명		
	주소(직장 또는 자택)		
	국가연구자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		
	휴대전화 / 직장전화		
	전자우편		
[] 대표자 [] 관리인 [] 선정대표자 [] 대리인 (해당 시 작성)	성명		
	주소(직장 또는 자택)		
	소속		
	휴대전화 / 직장전화		
소관 중앙행정기관명			
사전통지 문서명			
사전통지를 통보받은 날	0000. 00. 00.		
증거 서류			
재검토 희망 기관(택일)	<input type="checkbox"/>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input type="checkbox"/> 소관 중앙행정기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3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재처분 및 환수 사전통지 내용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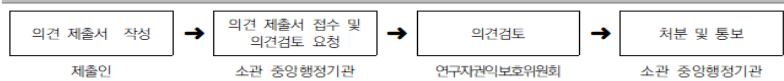
년 월 일

제출인 (인 또는 직인)

중앙행정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대표자, 관리인,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리를 소명하는 서류(대표자, 관리인,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만 제출)
2. 재검토 요청 의견제출 취지 및 이유(별지), 그 밖에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나 증거물

처리 절차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p.31 ~ p.32

제3장 제재처분 절차

〈 참고 : 재검토요청서 서식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재검토요청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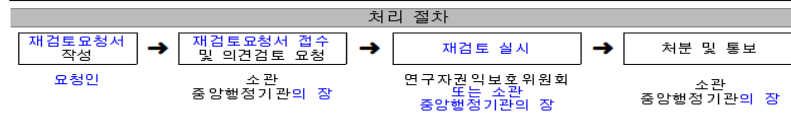
◆ 뒤쪽의 작성 요령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접수번호란과 접수일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양쪽)

접수번호		접수일	
요청인	성명 또는 기관명		
	주소(직장 또는 자택)		
	국가연구자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		
	휴대전화 / 직장전화		
	전자우편		
[] 대표자 [] 대리인	성명		
	주소(직장 또는 자택)		
	소속		
	휴대전화 / 직장전화		
소관 중앙행정기관명			
사전통지 문서명			
사전통지를 통보받은 날	0000. 00. 00.		
제재처분 재검토 요청 내용	요청인	참여제한(년,개월)	제재처분의 내용 제재부가금(원) 환수금(원)
재검토 요청취지 재검토 요청사유			
증거 서류			
재검토 희망 기관(택일)	<input type="checkbox"/>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input type="checkbox"/>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0호에 따라 위와 같이 제재처분 및 환수 사전통지 내용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인 또는 직인)

중앙행정기관의 장 귀하



-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 시행규칙
- 별지 제10호
- 서식 변경에 따른
- 재검토요청서
- 서식 변경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제출인
 - 1) 성명 또는 기관명: 재검토 요청 의견을 제출하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연구개발기관명을 기재합니다.
 - 2) 주소: 제출인의 거주지(주택, 직장 모두 가능) 또는 소재지 주소를 기재합니다.
 - 3) 국가연구자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 제출인의 국가연구자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2. 대표자, 관리인, 선정대표자, 대리인(해당 시 작성)
 - 1) 대표자: 제출인이 연구개발기관일 경우 기관의 대표자 정보를 기재합니다.
 - 2) 관리인: 제출인이 연구개발기관이고 관리인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관리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 3) 선정대표자: 여러 명의 제출인이 공동으로 재검토 요청 의견을 제출하면서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 대표자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 4) 대리인: 제출인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대리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3. 소관 중앙행정기관명: 제재처분을 사전통지 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4. 사전통지 문서명: 제재처분 사전통지 문서의 제목을 기재합니다.
5. 사전통지를 통보받은 날: 제재처분 사전통지 문서가 제출인에게 도달한 날을 기재합니다.
6. 증거 서류: 재검토 요청 의견 및 사유를 뒷받침하는 증거서류, 증거물 등의 제목 또는 명칭을 나열하여 작성합니다.
7. 재검토 희망 기관: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와 소관 중앙행정기관 중 재검토 요청 의견을 제출하는 자가 재검토를 희망하는 기관을 선택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요청인
 - 1) 성명 또는 기관명: 재검토요청서를 제출하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연구개발기관명을 기재합니다.
 - ◆ 대표 요청인(또는 기관)의 정보를 작성합니다. 전체 재검토요청인 명단은 하단의 "제재처분 재검토 요청 내용"에 작성합니다.
 - 2) 주소: 요청인의 거주지(주택, 직장 모두 가능) 또는 소재지 주소를 기재합니다.
 - 3) 국가연구자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
 - 국가연구자번호: 대표 요청인이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등 개인의 경우 기재
 - 사업자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 : 대표 요청인이 연구개발기관(비영리/영리기관)일 경우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등록번호 모두 기재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 요청인이 개인사업자일 경우 법인등록번호가 없으므로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 4) 휴대전화 / 직장전화: 재검토회의 일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는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 또는 직장전화 번호를 기재합니다.
 - 5) 전자우편: 재검토회의 일정 등을 안내 받을 수 있는 현재 사용 중인 전자우편 주소를 기재합니다.
 - ◆ 해당 휴대전화 및 전자우편으로 관련 연락이 송부되므로, 반드시 확인 가능한 연락처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대표자, 대리인
 - 1) 대표자: 요청인이 연구개발기관일 경우 기관의 대표자 정보를 기재합니다.
 - 2) 대리인: 요청인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대리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 ◆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을 소명하는 증거서류(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만 제출)를 하단 증거서류 목록에 기재 후 제출합니다.
 3. 소관 중앙행정기관명: 제재처분을 사전통지 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4. 사전통지 문서명: 제재처분 사전통지 문서의 제목을 기재합니다.
 5. 사전통지 통보받은 날: 제재처분 사전통지 문서가 제출인에게 도달한 날을 기재합니다.
 6. 제재처분 재검토 요청내용: 재검토를 요청하려는 처분내용을 제재처분 사전통지서에 따라 명확하게 기재하고, 요청인이 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 다수일 경우 표 안에 행을 추가하여 재검토요청인 별 제재처분 및 환수금을 구분하여 요청내용을 모두 작성합니다.
- 예) 재검토요청인이 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 다수인 경우

요청인	사전통지 제재처분 및 환수 내용		
	참여제한(년, 개월)	재채 부가금(원)	환수금(원)
연구개발기관 000	0년	0,000,000	0,000,000
대표자 000	0년	0,000,000	0,000,000
연구책임자 000	0년	0,000,000	0,000,000

7. 재검토 요청취지: 예) 00부에서 0000년 00월 00일에 사전통지한 참여제한 0년과 재채 부가금 0000원의 면제(또는 감경)를 요청합니다.
8. 재검토 요청사유: 사전통지된 제재처분에 대하여 재검토 요청 의견을 제출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되, 별지를 추가하여 작성 가능합니다.
9. 증거 서류: 1)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류(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만 제출), 2) 재검토 요청 의견 및 사유를 뒷받침하는 증거서류·증거물, 1)과 2)의 서류 제목 또는 명칭을 나열하여 작성합니다.
10. 재검토 희망 기관: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와 소관 중앙행정기관 중 요청인이 재검토를 희망하는 기관을 선택합니다.
11. 직인날인 : 요청인의 서명 또는 직인을 날인하되, 재검토요청인이 다수(개인과 기관 등)일 경우 각각의 서명 또는 직인을 모두 날인하여야 합니다.
 - 예) 사전통지 받은 대상이 연구책임자, 기업대표자, 대학교 산학협력단이지만 재검토요청서에 연구책임자와 기업대표자만 서명 날인하여 제출한 경우 재검토요청을 연구책임자와 기업대표자만 신청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p.32 ~ p.33

제3장 제재처분 절차

〈 재검토 요청 의견제출 취지 및 이유 〉

(4쪽 중 3쪽)

〈 재검토 요청 의견제출 취지 및 이유 〉

1. 해당 연구개발과제 정보

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기관명											
연구개발기간	전체										
	해당 단계										
연구개발비	전체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합계		
		현금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합계
	해당 단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합계		
		현금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합계

2. 제재처분 사전통지 내용

제재처분 및 환수 구분	<input type="checkbox"/> 참여제한 (기간 : 년 개월) <input type="checkbox"/> 제재부가금 (원) <input type="checkbox"/> 환수금 (원)
사전통지 문서명	
제재처분 개요	
제재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의 경위	

3. 재검토 요청 의견 제출사유

재검토 요청 의견 요지

의견 제출사유

위와 같이 제재처분 및 환수 사전통지 내용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하오니 위에 적힌 내용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중앙행정기관의 장 귀하

210mm x 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상지(80g/m²))

<삭제>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2.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3.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부여된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4. 연구개발기관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중 재검토 요청 의견을 제출하는 당사자가 제재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할 당시에 소속된 연구개발기관명 또는 재검토 요청 의견을 제출하는 연구개발기관명을 기재합니다.
5. 연구개발기간
 - 1) 전체: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서 협약기간을 기재합니다.
 - 2) 해당 단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기간을 기재합니다.
6. 연구개발비
 - 1) 전체: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 지원받는 연구개발비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2) 해당 단계: 해당 단계 연구개발기간 동안 지원받는 연구개발비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7. 제재처분 및 환수 구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전통지 받은 제재처분의 종류를 선택하고, 참여제한일 경우 사전통지 받은 처분 기간을,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일 경우 사전통지 받은 처분 금액을 기재합니다.
8. 사전통지 문서명: 제재처분 사전통지 문서의 제목을 기재합니다.
9. 제재처분 개요: 제재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이에 대해 적용된 제재처분 사유, 이에 따라 사전통지 받은 제재처분의 내용 등을 간략히 요약하여 기재합니다.
10. 제재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의 경위: 제재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 혹은 사건에 대한 내용 및 발생 경위를 기재합니다.
11. 재검토 요청 의견 요지: 사전통지된 제재처분에 대한 재검토 요청 사항을 기재합니다.
12. 의견 제출사유: 사전통지된 제재처분에 대하여 재검토 요청 의견을 제출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신설>

p.33

제3장 제재처분 절차

<예시> 제재처분 재검토요청서 작성 예시

- 연구책임자 홍길동 참여제한 2년, 연구개발기관 A대학 제재부가금 3백만원에 대해 연구책임자가 대표로 재검토 요청하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재검토요청서

※ 뒤쪽의 작성 요령을 읽고 작성하시기 보라며, 접수번호란과 접수일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알록)

접수번호	접수일		
요청인	성명 또는 기관명	홍길동	
	주소(직장 또는 자택)	OO도 OO시 OO길 123	
	국가연구자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	1234567	
	휴대전화 / 직장전화	010-123-4567	
	전자우편	abc@korea.kr	
[] 대표자 [] 대리인	성명	홍길동	
	주소(직장 또는 자택)	OO도 OO시 OO길 123	
	소속	A 대학교	
	휴대전화 / 직장전화	010-123-4567	
소관 중앙행정기관명	OO부		
사전통지 문서명	OOOO사업 OOOO과제 제재처분 사전 통지 안내		
사전통지 통보받은 날	OOOO. OO. OO.		
제재처분 재검토 요청 내용	요청인	홍길동	
	참여제한(년,개월)	2	-
	제재부가금(원)	3,000,000	-
합수금(원)	-	-	-
재검토 요청취지	OO부에서 OOOO. OO. OO. 사전통지한 홍길동의 참여제한 2년과 A대학교의 제재부가금 3,000,000만원 면제를 요청합니다.		
재검토 요청사유	별지로 작성		
증거 서류	1. 증거서류(가) 2. 증거서류(나)		
재검토 희망 기관(택일)	<input type="checkbox"/>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input type="checkbox"/>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0호에 따라 위와 같이 제재처분 및 환수 사전통지 내용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인 또는 직인)

중앙행정기관의 장 귀하

-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 시행규칙
- 별지 제10호
- 서식 개정
- 에 따라
- 이의신청
- 대상자가
- 재검토요청
- 서 작성 시
- 참고할 수
- 있도록 작성
- 방법 등
- 안내

<p>p.50 제4장 제재처분 기준 1. 제재처분 일반 기준 <신설></p>	<p>p.50 제4장 제재처분 기준 1. 제재처분 일반 기준 마. 기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제한 처분은 사안별로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처분대상자를 결정함. 즉, 처분대상자를 ① 기관에게만 ② 개인에게만 ③ 기관과 개인 모두 등으로 결정 가능 	<p>- 부처가 혁신법 취지에 따라 사안별로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처분대상자를 결정 가능함을 명확히 안내</p>						
<p>p.57 제4장 제재처분 기준 2. 제재처분사유별 가중·감경 세부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방법) <table border="1" data-bbox="185 1047 1005 1101"> <tr> <td>위반행위 유형의 결정</td> <td>가중·감경 여부 결정</td> <td>처분정도의 결정</td> </tr> </table> <p>- ① 위반행위 유형의 결정 : 법령 위반행위가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제32조 제1항 각호 중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결정한다.</p> <p>※ 본 세부기준에 기재된 ‘유형의 예시’ 및 ‘가중·감경요소의 예시’는 범례에 불과하고, 이에 한정하지 아니한다.</p>	위반행위 유형의 결정	가중·감경 여부 결정	처분정도의 결정	<p>p.57 제4장 제재처분 기준 2. 제재처분사유별 가중·감경 세부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방법) <table border="1" data-bbox="1049 1047 1868 1101"> <tr> <td>위반행위 유형의 결정</td> <td>가중·감경 여부 결정</td> <td>처분정도의 결정</td> </tr> </table> <p>- ① 위반행위 유형의 결정 : 법령 위반행위가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제32조 제1항 각호 중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결정한다.</p> <p>※ 본 세부기준에 기재된 ‘유형의 예시’ 및 ‘가중·감경요소의 예시’는 범례에 불과하고, 이에 한정하지 아니한다.</p>	위반행위 유형의 결정	가중·감경 여부 결정	처분정도의 결정	<p>- 부처가 혁신법 취지에 따라 가중 및 감경 사유를 제재처분 종류별로 각각 고려 가능함을 명확히 하여 혼란 방지</p>
위반행위 유형의 결정	가중·감경 여부 결정	처분정도의 결정						
위반행위 유형의 결정	가중·감경 여부 결정	처분정도의 결정						

<p>- ② 가중, 감경 여부의 결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6] 및 [별표 7]의 가중·감경기준 중 명확히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와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감경의 필요성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p> <p>- ③ 처분정도의 결정 : 가중·감경의 범위 내에서 처분의 정도를 결정한다.</p> <p>※ 가중사유가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 중복하여 가중 처분가능하나, 상한선(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는 감경처분의 경우에도 동일하고, 이 때 하한선(2분의 1) 미만으로 감경할 수 없다.</p>	<p>- ② 가중, 감경 여부의 결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6] 및 [별표 7]의 가중·감경기준 중 명확히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와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감경의 필요성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p> <p>- ③ 처분정도의 결정 : 가중·감경의 범위 내에서 처분의 정도를 결정한다.</p> <p>※ 가중사유가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 중복하여 가중 처분가능하나, 상한선(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는 감경처분의 경우에도 동일하고, 이 때 하한선(2분의 1) 미만으로 감경할 수 없다.</p> <p>- ④ 참여제한과 제재부가금 별도 처분 : 가중 및 감경 사유는 제재처분의 종류(참여제한/제재부가금)에 따라 달리 적용 가능하다.</p> <p>※ 참여제한과 제재부가금 중 하나만 감경(가중)할 수 있거나 모두 감경(가중)할수 있음</p>	
---	---	--

<p>p.58 제4장 제재처분 기준 2. 제재처분사유별 가중·감경 세부기준 (1) 수행과정 및 결과의 극히 불량(혁신법 제32조 제1항 제1호)</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 colspan="2">제재처분</th> <th>감경</th> <th>기본</th> <th>가중</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수행과정 및 결과의 극히 불량</td> <td colspan="2">참여제한</td> <td>1년 ~ 2년</td> <td>2년</td> <td>2년 ~ 3년</td> </tr> <tr> <td rowspan="2">제재부가금 (정부지원연구 개발비 기준)</td> <td>기관</td> <td>50% ~ 100%</td> <td>100%</td> <td>100% ~ 150%</td> </tr> <tr> <td>개인</td> <td>10% ~ 20%</td> <td>20%</td> <td>20% ~ 30%</td> </tr> </tbody> </table>	구분	제재처분		감경	기본	가중	수행과정 및 결과의 극히 불량	참여제한		1년 ~ 2년	2년	2년 ~ 3년	제재부가금 (정부지원연구 개발비 기준)	기관	50% ~ 100%	100%	100% ~ 150%	개인	10% ~ 20%	20%	20% ~ 30%	<p>p.58 제4장 제재처분 기준 2. 제재처분사유별 가중·감경 세부기준 (1) 수행과정 및 결과의 극히 불량(혁신법 제32조 제1항 제1호)</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 colspan="2">제재처분</th> <th>감경</th> <th>기본</th> <th>가중</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수행과정 및 결과의 극히 불량</td> <td colspan="2">참여제한</td> <td rowspan="3">2분의 1의 범위</td> <td>2년</td> <td rowspan="3">2분의 1의 범위</td> </tr> <tr> <td rowspan="2">제재부가금 (정부지원연구 개발비 기준)</td> <td>기관</td> <td>100%</td> </tr> <tr> <td>개인</td> <td>20%</td> </tr> </tbody> </table>	구분	제재처분		감경	기본	가중	수행과정 및 결과의 극히 불량	참여제한		2분의 1의 범위	2년	2분의 1의 범위	제재부가금 (정부지원연구 개발비 기준)	기관	100%	개인	20%	<p>-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시행령 [별표 6], [별표 7]의 감경 및 가중 기준으로 일치</p>
구분	제재처분		감경	기본	가중																																			
수행과정 및 결과의 극히 불량	참여제한		1년 ~ 2년	2년	2년 ~ 3년																																			
	제재부가금 (정부지원연구 개발비 기준)	기관	50% ~ 100%	100%	100% ~ 150%																																			
		개인	10% ~ 20%	20%	20% ~ 30%																																			
구분	제재처분		감경	기본	가중																																			
수행과정 및 결과의 극히 불량	참여제한		2분의 1의 범위	2년	2분의 1의 범위																																			
	제재부가금 (정부지원연구 개발비 기준)	기관		100%																																				
		개인		20%																																				
<p>p.60 제4장 제재처분 기준 2. 제재처분사유별 가중·감경 세부기준 (2) 법 또는 협약 상 의무 위반(혁신법 제32조 제1항 제2호)</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 colspan="2">제재처분</th> <th>감경</th> <th>기본</th> <th>가중</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법 또는 협약상 의무 위반</td> <td colspan="2">참여제한</td> <td>1년 ~ 2년</td> <td>2년</td> <td>2년 ~ 3년</td> </tr> <tr> <td rowspan="2">제재부가금 (정부지원연구 개발비 기준)</td> <td>기관</td> <td>50% ~ 100%</td> <td>100%</td> <td>100% ~ 150%</td> </tr> <tr> <td>개인</td> <td>10% ~ 20%</td> <td>20%</td> <td>20% ~ 30%</td> </tr> </tbody> </table>	구분	제재처분		감경	기본	가중	법 또는 협약상 의무 위반	참여제한		1년 ~ 2년	2년	2년 ~ 3년	제재부가금 (정부지원연구 개발비 기준)	기관	50% ~ 100%	100%	100% ~ 150%	개인	10% ~ 20%	20%	20% ~ 30%	<p>p.60 제4장 제재처분 기준 2. 제재처분사유별 가중·감경 세부기준 (2) 법 또는 협약 상 의무 위반(혁신법 제32조 제1항 제2호)</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 colspan="2">제재처분</th> <th>감경</th> <th>기본</th> <th>가중</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법 또는 협약상 의무 위반</td> <td colspan="2">참여제한</td> <td rowspan="3">2분의 1의 범위</td> <td>2년</td> <td rowspan="3">2분의 1의 범위</td> </tr> <tr> <td rowspan="2">제재부가금 (정부지원연구 개발비 기준)</td> <td>기관</td> <td>100%</td> </tr> <tr> <td>개인</td> <td>20%</td> </tr> </tbody> </table>	구분	제재처분		감경	기본	가중	법 또는 협약상 의무 위반	참여제한		2분의 1의 범위	2년	2분의 1의 범위	제재부가금 (정부지원연구 개발비 기준)	기관	100%	개인	20%	<p>-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시행령 [별표 6], [별표 7]의 감경 및 가중 기준으로 일치</p>
구분	제재처분		감경	기본	가중																																			
법 또는 협약상 의무 위반	참여제한		1년 ~ 2년	2년	2년 ~ 3년																																			
	제재부가금 (정부지원연구 개발비 기준)	기관	50% ~ 100%	100%	100% ~ 150%																																			
		개인	10% ~ 20%	20%	20% ~ 30%																																			
구분	제재처분		감경	기본	가중																																			
법 또는 협약상 의무 위반	참여제한		2분의 1의 범위	2년	2분의 1의 범위																																			
	제재부가금 (정부지원연구 개발비 기준)	기관		100%																																				
		개인		20%																																				

<p>p.60 제4장 제재처분 기준 2. 제재처분사유별 가중·감경 세부기준 [유형의 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법 및 관련 규정, 연구개발 협약상 의무를 고의로 위반하여, 혁신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평가에 따라 연구개발 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를 의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평가 결과 법 또는 협약 상 의무위반의 고의성이 입증되고 제재처분의 필요성 등이 확인 되어야 함 	<p>p.60 제4장 제재처분 기준 2. 제재처분사유별 가중·감경 세부기준 [유형의 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법 및 관련 규정, 연구개발 협약상 의무를 고의로 위반하여, 혁신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평가에 따라 연구개발 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를 의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평가 결과 법 또는 협약 상 의무위반의 고의성이 입증되고 제재처분의 필요성 등이 확인 되어야 함 (예) 혁신법 및 관련 규정의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장비를 구매하거나 임의로 처분하여, 특별평가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 	<p>- 예시 추가</p>																																								
<p>p.61 제4장 제재처분 기준 2. 제재처분사유별 가중·감경 세부기준 (3) 연구개발 자료·성과의 위조·변조·표절 및 부당한 저자 표시(혁신법 제31조 제1항 제1호)</p> <table border="1" data-bbox="179 1166 1012 1382"> <thead> <tr> <th>구분</th> <th colspan="2">제재처분</th> <th>감경</th> <th>기본</th> <th>가중</th> </tr> </thead> <tbody> <tr> <td>연구개발</td> <td colspan="2">참여제한</td> <td>1년 6개월~3년</td> <td>3년 이내</td> <td>3년~4년 6개월</td> </tr> <tr> <td rowspan="2">자료·성과의 위조 등</td> <td rowspan="2">제재부가금 (정부지원연구 개발비 기준)</td> <td>기관</td> <td>75% ~ 150%</td> <td>150%</td> <td>150% ~ 225%</td> </tr> <tr> <td>개인</td> <td>15% ~ 30%</td> <td>30%</td> <td>30% ~ 45%</td> </tr> </tbody> </table>	구분	제재처분		감경	기본	가중	연구개발	참여제한		1년 6개월~3년	3년 이내	3년~4년 6개월	자료·성과의 위조 등	제재부가금 (정부지원연구 개발비 기준)	기관	75% ~ 150%	150%	150% ~ 225%	개인	15% ~ 30%	30%	30% ~ 45%	<p>p.61 제4장 제재처분 기준 2. 제재처분사유별 가중·감경 세부기준 (3) 연구개발 자료·성과의 위조·변조·표절 및 부당한 저자 표시(혁신법 제31조 제1항 제1호)</p> <table border="1" data-bbox="1044 1166 1878 1382"> <thead> <tr> <th>구분</th> <th colspan="2">제재처분</th> <th>감경</th> <th>기본</th> <th>가중</th> </tr> </thead> <tbody> <tr> <td>연구개발</td> <td colspan="2">참여제한</td> <td rowspan="3">2분의 1의 범위</td> <td>3년 이내</td> <td rowspan="3">2분의 1의 범위</td> </tr> <tr> <td rowspan="2">자료·성과의 위조 등</td> <td rowspan="2">제재부가금 (정부지원연구 개발비 기준)</td> <td>기관</td> <td>150%</td> </tr> <tr> <td>개인</td> <td>30%</td> </tr> </tbody> </table>	구분	제재처분		감경	기본	가중	연구개발	참여제한		2분의 1의 범위	3년 이내	2분의 1의 범위	자료·성과의 위조 등	제재부가금 (정부지원연구 개발비 기준)	기관	150%	개인	30%	<p>-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시행령 [별표 6], [별표 7]의 감경 및 가중 기준으로 일치</p>
구분	제재처분		감경	기본	가중																																					
연구개발	참여제한		1년 6개월~3년	3년 이내	3년~4년 6개월																																					
자료·성과의 위조 등	제재부가금 (정부지원연구 개발비 기준)	기관	75% ~ 150%	150%	150% ~ 225%																																					
		개인	15% ~ 30%	30%	30% ~ 45%																																					
구분	제재처분		감경	기본	가중																																					
연구개발	참여제한		2분의 1의 범위	3년 이내	2분의 1의 범위																																					
자료·성과의 위조 등	제재부가금 (정부지원연구 개발비 기준)	기관		150%																																						
		개인		30%																																						

<p>p.64</p> <p>제4장 제재처분 기준</p> <p>2. 제재처분사유별 가중·감경 세부기준</p> <p>[유형의 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법 제13조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를 의미함 ※ 연구개발비를 해당 과제의 연구수행에 사용하였지만 실수 또는 부주의로 인한 증빙서류 미비, 연구비 사용계획 변경 시 전문기관 미승인 등 경미하게 규정을 위반한 경우 등은 제재처분의 대상이 아니므로 정산을 통한 회수를 진행하여야 함 ● 연구 장비 도입 관련 연구개발비 횡령 등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p>p.64</p> <p>제4장 제재처분 기준</p> <p>2. 제재처분사유별 가중·감경 세부기준</p> <p>[유형의 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법 제13조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를 의미함 ※ 연구개발비를 해당 과제의 연구수행에 사용하였지만 실수 또는 부주의로 인한 증빙서류 미비, 연구비 사용계획 변경 시 전문기관 미승인 등 경미하게 규정을 위반한 경우 등은 제재처분의 대상이 아니므로 정산을 통한 회수를 진행하여야 함 ● 연구 장비 도입 관련 연구개발비 횡령 등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장비비를 허위로 또는 과도하게 청구한 후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개인적으로 편취하는 행위 - 연구개발과제와 관련 없는 장비에 대한 비용을 연구장비비로 집행하는 경우 	<p>- 예시 추가</p>
---	--	----------------

<p>p.67 제4장 제재처분 기준 2. 제재처분사유별 가중·감경 세부기준 (5)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 위반(혁신법 제32조 제1항 제3호)</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 colspan="2">제재처분</th> <th>감경</th> <th>기본</th> <th>가중</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연구개발 성과의 소유·관리 위반</td> <td colspan="2">참여제한</td> <td>1년 6개월 ~ 3년</td> <td>3년</td> <td>3년 ~ 4년 6개월</td> </tr> <tr> <td rowspan="2">제재부가금 (정부지원연구 개발비 기준)</td> <td>기관</td> <td>75% ~ 150%</td> <td>150%</td> <td>150% ~ 225%</td> </tr> <tr> <td>개인</td> <td>15% ~ 30%</td> <td>30%</td> <td>30% ~ 45%</td> </tr> </tbody> </table>	구분	제재처분		감경	기본	가중	연구개발 성과의 소유·관리 위반	참여제한		1년 6개월 ~ 3년	3년	3년 ~ 4년 6개월	제재부가금 (정부지원연구 개발비 기준)	기관	75% ~ 150%	150%	150% ~ 225%	개인	15% ~ 30%	30%	30% ~ 45%	<p>p.67 제4장 제재처분 기준 2. 제재처분사유별 가중·감경 세부기준 (5)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 위반(혁신법 제32조 제1항 제3호)</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 colspan="2">제재처분</th> <th>감경</th> <th>기본</th> <th>가중</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연구개발 성과의 소유·관리 위반</td> <td colspan="2">참여제한</td> <td rowspan="3">2분의 1의 범위</td> <td>3년</td> <td rowspan="3">2분의 1의 범위</td> </tr> <tr> <td rowspan="2">제재부가금 (정부지원연구 개발비 기준)</td> <td>기관</td> <td>150%</td> </tr> <tr> <td>개인</td> <td>30%</td> </tr> </tbody> </table>	구분	제재처분		감경	기본	가중	연구개발 성과의 소유·관리 위반	참여제한		2분의 1의 범위	3년	2분의 1의 범위	제재부가금 (정부지원연구 개발비 기준)	기관	150%	개인	30%	<p>-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시행령 [별표 6], [별표 7]의 감경 및 가중 기준으로 일치</p>
구분	제재처분		감경	기본	가중																																			
연구개발 성과의 소유·관리 위반	참여제한		1년 6개월 ~ 3년	3년	3년 ~ 4년 6개월																																			
	제재부가금 (정부지원연구 개발비 기준)	기관	75% ~ 150%	150%	150% ~ 225%																																			
		개인	15% ~ 30%	30%	30% ~ 45%																																			
구분	제재처분		감경	기본	가중																																			
연구개발 성과의 소유·관리 위반	참여제한		2분의 1의 범위	3년	2분의 1의 범위																																			
	제재부가금 (정부지원연구 개발비 기준)	기관		150%																																				
		개인		30%																																				
<p>p.69 제4장 제재처분 기준 2. 제재처분사유별 가중·감경 세부기준 (6) 보안대책 위반(혁신법 제31조 제1항 제4호)</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 colspan="2">제재처분</th> <th>감경</th> <th>기본</th> <th>가중</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보안대책 위반</td> <td colspan="2">참여제한</td> <td>1년 ~ 2년</td> <td>2년</td> <td>2년 ~ 3년</td> </tr> <tr> <td rowspan="2">제재부가금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준)</td> <td>기관</td> <td>50% ~ 100%</td> <td>100%</td> <td>100% ~ 150%</td> </tr> <tr> <td>개인</td> <td>10% ~ 20%</td> <td>20%</td> <td>20% ~ 30%</td> </tr> </tbody> </table>	구분	제재처분		감경	기본	가중	보안대책 위반	참여제한		1년 ~ 2년	2년	2년 ~ 3년	제재부가금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준)	기관	50% ~ 100%	100%	100% ~ 150%	개인	10% ~ 20%	20%	20% ~ 30%	<p>p.69 제4장 제재처분 기준 2. 제재처분사유별 가중·감경 세부기준 (6) 보안대책 위반(혁신법 제31조 제1항 제4호)</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 colspan="2">제재처분</th> <th>감경</th> <th>기본</th> <th>가중</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보안대책 위반</td> <td colspan="2">참여제한</td> <td rowspan="3">2분의 1의 범위</td> <td>2년</td> <td rowspan="3">2분의 1의 범위</td> </tr> <tr> <td rowspan="2">제재부가금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준)</td> <td>기관</td> <td>100%</td> </tr> <tr> <td>개인</td> <td>20%</td> </tr> </tbody> </table>	구분	제재처분		감경	기본	가중	보안대책 위반	참여제한		2분의 1의 범위	2년	2분의 1의 범위	제재부가금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준)	기관	100%	개인	20%	<p>※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시행령 [별표 6], [별표 7]의 감경 및 가중 기준으로 일치</p>
구분	제재처분		감경	기본	가중																																			
보안대책 위반	참여제한		1년 ~ 2년	2년	2년 ~ 3년																																			
	제재부가금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준)	기관	50% ~ 100%	100%	100% ~ 150%																																			
		개인	10% ~ 20%	20%	20% ~ 30%																																			
구분	제재처분		감경	기본	가중																																			
보안대책 위반	참여제한		2분의 1의 범위	2년	2분의 1의 범위																																			
	제재부가금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준)	기관		100%																																				
		개인		20%																																				

<p>p.71 제4장 제재처분 기준 2. 제재처분사유별 가중·감경 세부기준 (7) 보안사항 국내 누설 및 유출(혁신법 제31조 제1항 제4호)</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 colspan="2">제재처분</th> <th>감경</th> <th>기본</th> <th>가중</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보안사항 국내누설 및 유출</td> <td colspan="2">참여제한</td> <td>1년 ~ 2년</td> <td>2년</td> <td>2년 ~ 3년</td> </tr> <tr> <td rowspan="2">제재부가금 (정부지원연구 개발비 기준)</td> <td>기관</td> <td>50% ~ 100%</td> <td>100%</td> <td>100% ~ 150%</td> </tr> <tr> <td>개인</td> <td>10% ~ 20%</td> <td>20%</td> <td>20% ~ 30%</td> </tr> </tbody> </table>	구분	제재처분		감경	기본	가중	보안사항 국내누설 및 유출	참여제한		1년 ~ 2년	2년	2년 ~ 3년	제재부가금 (정부지원연구 개발비 기준)	기관	50% ~ 100%	100%	100% ~ 150%	개인	10% ~ 20%	20%	20% ~ 30%	<p>p.71 제4장 제재처분 기준 2. 제재처분사유별 가중·감경 세부기준 (7) 보안사항 국내 누설 및 유출(혁신법 제31조 제1항 제4호)</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 colspan="2">제재처분</th> <th>감경</th> <th>기본</th> <th>가중</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보안사항 국내누설 및 유출</td> <td colspan="2">참여제한</td> <td rowspan="3">2분의 1의 범위</td> <td>2년</td> <td rowspan="3">2분의 1의 범위</td> </tr> <tr> <td rowspan="2">제재부가금 (정부지원연구 개발비 기준)</td> <td>기관</td> <td>100%</td> </tr> <tr> <td>개인</td> <td>20%</td> </tr> </tbody> </table>	구분	제재처분		감경	기본	가중	보안사항 국내누설 및 유출	참여제한		2분의 1의 범위	2년	2분의 1의 범위	제재부가금 (정부지원연구 개발비 기준)	기관	100%	개인	20%	<p>※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시행령 [별표 6], [별표 7]의 감경 및 가중 기준으로 일치</p>
구분	제재처분		감경	기본	가중																																			
보안사항 국내누설 및 유출	참여제한		1년 ~ 2년	2년	2년 ~ 3년																																			
	제재부가금 (정부지원연구 개발비 기준)	기관	50% ~ 100%	100%	100% ~ 150%																																			
		개인	10% ~ 20%	20%	20% ~ 30%																																			
구분	제재처분		감경	기본	가중																																			
보안사항 국내누설 및 유출	참여제한		2분의 1의 범위	2년	2분의 1의 범위																																			
	제재부가금 (정부지원연구 개발비 기준)	기관		100%																																				
		개인		20%																																				
<p>p.72 제4장 제재처분 기준 2. 제재처분사유별 가중·감경 세부기준 (8) 보안사항 국외 누설 및 유출(혁신법 제31조 제1항 제4호)</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 colspan="2">제재처분</th> <th>감경</th> <th>기본</th> <th>가중</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보안사항 국외누설 및 유출</td> <td colspan="2">참여제한</td> <td>2년 6개월 ~ 5년</td> <td>5년</td> <td>5년 ~ 7년 6개월</td> </tr> <tr> <td rowspan="2">제재부가금 (정부지원연구 개발비 기준)</td> <td>기관</td> <td>125% ~ 250%</td> <td>250%</td> <td>250% ~ 375%</td> </tr> <tr> <td>개인</td> <td>25% ~ 50%</td> <td>50%</td> <td>50% ~ 75%</td> </tr> </tbody> </table>	구분	제재처분		감경	기본	가중	보안사항 국외누설 및 유출	참여제한		2년 6개월 ~ 5년	5년	5년 ~ 7년 6개월	제재부가금 (정부지원연구 개발비 기준)	기관	125% ~ 250%	250%	250% ~ 375%	개인	25% ~ 50%	50%	50% ~ 75%	<p>p.72 제4장 제재처분 기준 2. 제재처분사유별 가중·감경 세부기준 (8) 보안사항 국외 누설 및 유출(혁신법 제31조 제1항 제4호)</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 colspan="2">제재처분</th> <th>감경</th> <th>기본</th> <th>가중</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보안사항 국외누설 및 유출</td> <td colspan="2">참여제한</td> <td rowspan="3">2분의 1의 범위</td> <td>5년</td> <td rowspan="3">2분의 1의 범위</td> </tr> <tr> <td rowspan="2">제재부가금 (정부지원연구 개발비 기준)</td> <td>기관</td> <td>250%</td> </tr> <tr> <td>개인</td> <td>50%</td> </tr> </tbody> </table>	구분	제재처분		감경	기본	가중	보안사항 국외누설 및 유출	참여제한		2분의 1의 범위	5년	2분의 1의 범위	제재부가금 (정부지원연구 개발비 기준)	기관	250%	개인	50%	<p>-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시행령 [별표 6], [별표 7]의 감경 및 가중 기준으로 일치</p>
구분	제재처분		감경	기본	가중																																			
보안사항 국외누설 및 유출	참여제한		2년 6개월 ~ 5년	5년	5년 ~ 7년 6개월																																			
	제재부가금 (정부지원연구 개발비 기준)	기관	125% ~ 250%	250%	250% ~ 375%																																			
		개인	25% ~ 50%	50%	50% ~ 75%																																			
구분	제재처분		감경	기본	가중																																			
보안사항 국외누설 및 유출	참여제한		2분의 1의 범위	5년	2분의 1의 범위																																			
	제재부가금 (정부지원연구 개발비 기준)	기관		250%																																				
		개인		50%																																				

<p>p.73 제4장 제재처분 기준 2. 제재처분사유별 가중·감경 세부기준 (9)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 신청 또는 수행 (혁신법 제31조 제1항 제5호)</p> <table border="1" data-bbox="179 521 1012 737"> <thead> <tr> <th>구분</th> <th colspan="2">제재처분</th> <th>감경</th> <th>기본</th> <th>가중</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부정한 방법으로 과제 신청·수행</td> <td colspan="2">참여제한</td> <td>1년 ~ 2년</td> <td>2년</td> <td>2년 ~ 3년</td> </tr> <tr> <td rowspan="2">제재부가금 (정부지원연구 개발비 기준)</td> <td>기관</td> <td>50% ~ 100%</td> <td>100%</td> <td>100% ~ 150%</td> </tr> <tr> <td>개인</td> <td>10% ~ 20%</td> <td>20%</td> <td>20% ~ 30%</td> </tr> </tbody> </table>	구분	제재처분		감경	기본	가중	부정한 방법으로 과제 신청·수행	참여제한		1년 ~ 2년	2년	2년 ~ 3년	제재부가금 (정부지원연구 개발비 기준)	기관	50% ~ 100%	100%	100% ~ 150%	개인	10% ~ 20%	20%	20% ~ 30%	<p>p.73 제4장 제재처분 기준 2. 제재처분사유별 가중·감경 세부기준 (9)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 신청 또는 수행 (혁신법 제31조 제1항 제5호)</p> <table border="1" data-bbox="1044 521 1878 737"> <thead> <tr> <th>구분</th> <th colspan="2">제재처분</th> <th>감경</th> <th>기본</th> <th>가중</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부정한 방법으로 과제 신청·수행</td> <td colspan="2">참여제한</td> <td rowspan="3">2분의 1의 범위</td> <td>2년</td> <td rowspan="3">2분의 1의 범위</td> </tr> <tr> <td rowspan="2">제재부가금 (정부지원연구 개발비 기준)</td> <td>기관</td> <td>100%</td> </tr> <tr> <td>개인</td> <td>20%</td> </tr> </tbody> </table>	구분	제재처분		감경	기본	가중	부정한 방법으로 과제 신청·수행	참여제한		2분의 1의 범위	2년	2분의 1의 범위	제재부가금 (정부지원연구 개발비 기준)	기관	100%	개인	20%	<p>-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시행령 [별표 6], [별표 7]의 감경 및 가중 기준으로 일치</p>
구분	제재처분		감경	기본	가중																																			
부정한 방법으로 과제 신청·수행	참여제한		1년 ~ 2년	2년	2년 ~ 3년																																			
	제재부가금 (정부지원연구 개발비 기준)	기관	50% ~ 100%	100%	100% ~ 150%																																			
		개인	10% ~ 20%	20%	20% ~ 30%																																			
구분	제재처분		감경	기본	가중																																			
부정한 방법으로 과제 신청·수행	참여제한		2분의 1의 범위	2년	2분의 1의 범위																																			
	제재부가금 (정부지원연구 개발비 기준)	기관		100%																																				
		개인		20%																																				
<p>p.75 제4장 제재처분 기준 2. 제재처분사유별 가중·감경 세부기준 (10)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 저해 행위(혁신법 제31조 제1항 제6호)</p> <table border="1" data-bbox="179 1125 1012 1341"> <thead> <tr> <th>구분</th> <th colspan="2">제재처분</th> <th>감경</th> <th>기본</th> <th>가중</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연구개발 활동의 건전성 저해 행위</td> <td colspan="2">참여제한</td> <td>1년 ~ 2년</td> <td>2년</td> <td>2년 ~ 3년</td> </tr> <tr> <td rowspan="2">제재부가금 (정부지원연구개 발비 기준)</td> <td>기관</td> <td>50% ~ 100%</td> <td>100%</td> <td>100% ~ 150%</td> </tr> <tr> <td>개인</td> <td>10% ~ 20%</td> <td>20%</td> <td>20% ~ 30%</td> </tr> </tbody> </table>	구분	제재처분		감경	기본	가중	연구개발 활동의 건전성 저해 행위	참여제한		1년 ~ 2년	2년	2년 ~ 3년	제재부가금 (정부지원연구개 발비 기준)	기관	50% ~ 100%	100%	100% ~ 150%	개인	10% ~ 20%	20%	20% ~ 30%	<p>p.75 제4장 제재처분 기준 2. 제재처분사유별 가중·감경 세부기준 (10)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 저해 행위(혁신법 제31조 제1항 제6호)</p> <table border="1" data-bbox="1044 1125 1878 1341"> <thead> <tr> <th>구분</th> <th colspan="2">제재처분</th> <th>감경</th> <th>기본</th> <th>가중</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연구개발 활동의 건전성 저해 행위</td> <td colspan="2">참여제한</td> <td rowspan="3">2분의 1의 범위</td> <td>2년</td> <td rowspan="3">2분의 1의 범위</td> </tr> <tr> <td rowspan="2">제재부가금 (정부지원연구개 발비 기준)</td> <td>기관</td> <td>100%</td> </tr> <tr> <td>개인</td> <td>20%</td> </tr> </tbody> </table>	구분	제재처분		감경	기본	가중	연구개발 활동의 건전성 저해 행위	참여제한		2분의 1의 범위	2년	2분의 1의 범위	제재부가금 (정부지원연구개 발비 기준)	기관	100%	개인	20%	<p>-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시행령 [별표 6], [별표 7]의 감경 및 가중 기준으로 일치</p>
구분	제재처분		감경	기본	가중																																			
연구개발 활동의 건전성 저해 행위	참여제한		1년 ~ 2년	2년	2년 ~ 3년																																			
	제재부가금 (정부지원연구개 발비 기준)	기관	50% ~ 100%	100%	100% ~ 150%																																			
		개인	10% ~ 20%	20%	20% ~ 30%																																			
구분	제재처분		감경	기본	가중																																			
연구개발 활동의 건전성 저해 행위	참여제한		2분의 1의 범위	2년	2분의 1의 범위																																			
	제재부가금 (정부지원연구개 발비 기준)	기관		100%																																				
		개인		20%																																				

<p>p.75</p> <p>[유형의 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정행위 제보자에 대한 신변상의 불이익 조치 ● 부정행위 제보자에 대한 위협·협박 ●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증빙자료의 위조·변조 ●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의 허위 보고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해당하는 행위 	<p>p.75</p> <p>[유형의 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정행위 제보자에 대한 신변상의 불이익 조치 ● 부정행위 제보자에 대한 위협·협박 ●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증빙자료의 위조·변조 - 연구장비 구매 관련 증빙서류를 허위로 발급하여 제출한 경우 ●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의 허위 보고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해당하는 행위 	<p>- 예시 추가</p>																																						
<p>p.77</p> <p>제4장 제재처분 기준</p> <p>2. 제재처분사유별 가중·감경 세부기준</p> <p>(11)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포기(혁신법 제32조 제1항 제4호)</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 colspan="2">제재처분</th> <th>감경</th> <th>기본</th> <th>가중</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연구개발 과제의 수행포기</td> <td colspan="2">참여제한</td> <td>1년 ~ 2년</td> <td>2년</td> <td>2년 ~ 3년</td> </tr> <tr> <td rowspan="2">제재부가금 (정부지원연구 개발비 기준)</td> <td>기관</td> <td>50% ~ 100%</td> <td>100%</td> <td>100% ~ 150%</td> </tr> <tr> <td>개인</td> <td>10% ~ 20%</td> <td>20%</td> <td>20% ~ 30%</td> </tr> </tbody> </table>	구분	제재처분		감경	기본	가중	연구개발 과제의 수행포기	참여제한		1년 ~ 2년	2년	2년 ~ 3년	제재부가금 (정부지원연구 개발비 기준)	기관	50% ~ 100%	100%	100% ~ 150%	개인	10% ~ 20%	20%	20% ~ 30%	<p>p.77</p> <p>제4장 제재처분 기준</p> <p>2. 제재처분사유별 가중·감경 세부기준</p> <p>(11)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포기(혁신법 제32조 제1항 제4호)</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 colspan="2">제재처분</th> <th>감경</th> <th>기본</th> <th>가중</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연구개발과 제의 수행포기</td> <td colspan="2">참여제한</td> <td rowspan="3">2분의 1의 범위</td> <td>2년</td> <td rowspan="3">2분의 1의 범위</td> </tr> <tr> <td rowspan="2">제재부가금 (정부지원연구 개발비 기준)</td> <td>기관</td> <td>100%</td> </tr> <tr> <td>개인</td> <td>20%</td> </tr> </tbody> </table>	구분	제재처분		감경	기본	가중	연구개발과 제의 수행포기	참여제한		2분의 1의 범위	2년	2분의 1의 범위	제재부가금 (정부지원연구 개발비 기준)	기관	100%	개인	20%	<p>-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시행령 [별표 6], [별표 7]의 감경 및 가중 기준으로 일치</p>
구분	제재처분		감경	기본	가중																																			
연구개발 과제의 수행포기	참여제한		1년 ~ 2년	2년	2년 ~ 3년																																			
	제재부가금 (정부지원연구 개발비 기준)	기관	50% ~ 100%	100%	100% ~ 150%																																			
		개인	10% ~ 20%	20%	20% ~ 30%																																			
구분	제재처분		감경	기본	가중																																			
연구개발과 제의 수행포기	참여제한		2분의 1의 범위	2년	2분의 1의 범위																																			
	제재부가금 (정부지원연구 개발비 기준)	기관		100%																																				
		개인		20%																																				

<신설>

p.86~87

제5장 제재처분재검토 주요쟁점사항 및 검토결과

5. 행정심판·소송 진행 시 조치사항

- (배경) 행정심판 또는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제재처분 효력 및 사후관리에 대한 문의 빈번
- (쟁점) 행정심판 또는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집행정지 결정이 된 경우, 제재처분 효력 유무와 그에 따른 사후관리 방안
- 심판청구 또는 소송 제기는 제재처분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심판이나 소송 중이라도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 납부 절차 진행 가능
(혁신법 제34조)
 - 다만, 제재처분 정보공개는 보류할 수 있음(혁신법 제33조 제7항)
 - 연구책임자의 참여제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또는 소송 중이라 하더라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특별평가 및 연구비 집행 중단 가능(혁신법 제15조 제1항 제2호)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재처분 대상자에게 제재처분을 통보하더라도, 당사자가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제재처분의 집행, 즉 연구개발과제 참여제한이나 제재부가금 부과에 대해 그 집행의 정지를 요청할 수 있음. 요청이

- 재검토심의 대상 안건이 현재 행정심판, 행정소송, 집행정지 등 진행 중인 경우, 제재처분 연기·중지 여부에 대한 문의 빈번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사항 안내

	<p>인정되어 제재처분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소관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부과한 제재처분의 효력과 그 처분을 실행하기 위한 모든 절차가 일시적으로 중단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행정지 기간 동안에는 제재처분 대상자에 대한 연구개발과제 참여제한 기간을 적용하거나 제재부가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없고, 집행정지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절차를 다시 시작해야 함 - 예를 들어 연구책임자에게 연구개발과제 참여제한 처분이 부과되었으나, 법원에서 해당 참여제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그 기간 동안에는 해당 연구책임자는 참여제한 상태가 아니며, 혁신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특별평가를 실시하거나 연구비 집행을 중단하는 조치도 불가 <p>※ 다만, 혁신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외 다른 사유가 있다면, 특별평가 및 연구개발비 집행 중단 가능</p>	
--	---	--

행정심판법 제30조(집행정지) ①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續行)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 ①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執行停止”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신설>

p.88~89

〈부록〉 연구자를 위한 신고·보상 제도 안내

1 목 적

- 본 안내문은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연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연구자가 참고할 수 있는 신고·보상 제도를 간략하게 소개하며, 상세 내용은 공공재정환수법, 부패방지권의 위법 및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참고할 것을 권고함

2 신 고 제 도

누구든지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또는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대상

- 부정청구 등 행위 (공공재정환수법):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을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한 경우


- 연구자가
참고할수
있는
신고·보상
제도 안내

- **부패행위 (부패방지권익위법):** 공공기관의 예산 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는 권익위 신고 건에 한하여 권익위에 보상 신청 가능

구분	예시
부정청구 등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과제와 무관한 기술개발, 물품 또는 장비 구매 ✓ 연구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 ✓ 집행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서류 제출, 비용 부풀리기
부패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미 개발이 완료된 제품을 신규 개발로 속여 연구 개발비를 편취 ✓ 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하여 연구비 편취 ✓ 학생 인건비와 연구 수당 등을 회수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

※ 「부패·공익신고 및 보상사례집」(국민권익위 발간), 청렴포털 '신고 맞춤사례' 참고

 **신고 방법**

- 온라인: 청렴포털(www.clean.go.kr)
- 방문: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국민권익위원회(세종)

-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
권익위원회, (우)30102

청렴포털(www.clean.go.kr)

- 관련 법·제도 안내, 신고, 상담, 보호·보상 신청 및 처리 과정
열람 서비스 등 제공
- 포털에서 신고 후 보상 신청 시 '나의 신고사건 조회' 기능을
통해 간편 처리 가능

💡 **신고 상담** 온라인 청렴포털(www.clean.go.kr) / 부패신고
상담전화 1398 또는 110

💡 **신고자 보호**

- **(비밀 보장)** 신고자 동의 없이 인적사항,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공개 금지
- **(책임 감면)** 직무상 비밀준수의무 면제, 신고 관련 형사처벌,
징계, 불합리한 행정처분 감면 가능 (재량사항)
- **(신분보장 조치 신청)**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은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
신청 가능
- **(신변보호 조치 요청)** 신고자 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신고
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 요구 가능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8조의2)

-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로 하여금 신고, 자료제출, 의견진술을 대리하게 하는 제도(국민권익위가 수당을 지급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운영)

※ 청렴포털(www.clean.go.kr)에서 국민권익위에 신고 시 활용 가능

3 보상 제도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 절감 시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최고 30억원까지 지급

〈 보상금 지급 기준 〉

보상대상가액*	보상금(최대)
1억원 이하	보상대상가액의 3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 1천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4%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3억 2천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8%
40억원 초과	4억 8천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보상대상가액이란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그 금액 의미

💡 보상금 신청

- 온라인: 청렴포털(www.clean.go.kr)
- 방문: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국민권익위원회(세종)
-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우)30102